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39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 윤준병 · 강준현 · 김윤덕

정동영 • 박희승 • 신영대

이춘석 • 한병도 • 박용갑

박홍배·조계원·허 영

위성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증가하면서 빈집 방치에 따른 쓰레기 적치, 범죄 증가, 붕괴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철거명령을 통해 빈집을 정비하고 있음.

그런데 자발적으로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여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보다 높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보유자의 자발적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 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4(빈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빈집과 그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4조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철거 판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7조의4(빈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
	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
	른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
	진하여 철거한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
	명령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
	령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포함
	한다)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
	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
	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
	<u>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
	자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
	항에 따른 철거명령 또는 「농

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빈집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04 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철거 판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